

협약서

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과 사회복지법인 장유대성복지재단(이하 ‘양 기관’이라고 한다.)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복지도시 김해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 본 협약을 이행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상호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복지 도시 김해 구현을 위한 지역복지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분야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① 김해시복지재단은 장유대성복지재단의 지역나눔활동을 지지하고 약속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.

- 가. 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
- 나. 지역나눔활동 적극 참여 및 홍보

② 장유대성복지재단은 복지도시 김해 구현을 위한 김해시 복지재단의 사업진행에 있어 상호 협력 체계구축에 힘쓴다.

- 가. 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
- 나.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
- 다.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 참여

제3조(효력) 본 약속의 효력은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종료 1개월 전에 통보가 없거나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경우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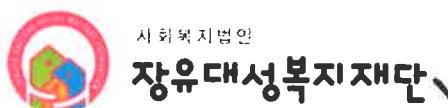
제4조(기타사항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각 기관은 상호협의 사항은 신뢰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,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10월 13일



이사장 허성곤



이사장 한재엽